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75

발의연월일: 2024. 7. 30.

발 의 자: 김문수・김우영・정동영

이용선 · 주철현 · 김 윤

김기표 • 박희승 • 이광희

박지혜•박범계•민형배

최민희 · 백승아 · 이기헌

정준호 · 조인철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이하 "생활주변방사선"이라 함)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보건법」은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이른바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 지 않은 상황임.

또한, 국민이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주변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의 실시를

청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조의2(기본이념)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1.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과 국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주변방사선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주변방사선 피폭(被曝)에 민감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 3.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국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주변방사선이 건 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조의2(기본이념) 생활주변방사
	선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u>한다.</u>
	1.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과 국
	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인과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
	<u>우에도 경제적·기술적으로</u>
	가능한 범위에서 생활주변방
	사선이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
	도록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u>마런하여야 한다.</u>
	2. 국가는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주변방사선 피폭(被曝)에
	민감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
	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
	전관리에 관한 정보가 국민에
	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8조의4(국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생활주변방사 선으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생활주변방사선이 건강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처리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